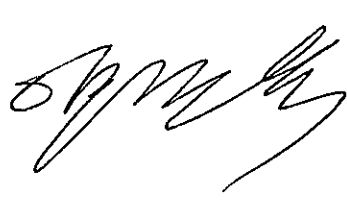
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
시민 곁으로 한뼘 더!

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 장



No.6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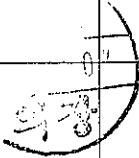
2018. 3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의원 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원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1 (2405)	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. -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사업 대상에 <u>혁신교육지구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(안 제3조제3항제7호)</u>	김혜련 의원 (찬성 25명) (행정자치)	2018. 3.5.
2 (2406)	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. -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<u>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6조제5항 신설)</u>	김혜련 의원 (찬성 24명) (보건복지)	2018. 3.5.
3 (2407)	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. - <u>교육감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제2항)</u>	 김혜련 의원 (찬성 24명) (교육)	2018. 3.5.